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

일부개정 2019. 7. 22. 규정 제796호

1. 개정이유

- 대학내 소관 위원회의 위원 수를 고려하고,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생자치위원회장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을 3명 증원하여 11명으로 하고,
- 생활관 입사자의 활동 및 생활수칙을 정함에 있어 기존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및 벌칙 내용 정비 및 생활관 입사자의 공동체생활이 모범적이고 봉사활동 참여가 있을 경우 내용별 "상점 및 포상" 신설

2. 주요내용

- 생활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8명에서 11명으로 변경(안 제4조)
 - 위원장 : 생활관장
 - 위원(당연직): 교학처장, 훈련처장, 사무국장, 체육학과장, 대외협력단장, 학생자치운영회장
 - 위원(임명직) :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 임명
- 입사자의 공동체 생활이 모범적이고, 봉사활동 참여가 있을 경우 내용별 상점 및 포상 부분 신설(안 제6조 제2항, 별표 1)

구 분	상 점 내 용	상점	포 상
1 4		0	т 6
	생활관 문제발생(화재 등) 시 도움을 준 학생동료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준 학생교직원으로부터 모범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 (운영위원회 심의)	50점	「공통부분」 < 50점 > ㅇ 문화상품권(5만원) + 벌점 삭제
모범 행동	ㅇ 학생자치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	30점	ㅇ 체육학과 T셔츠 + 벌점 삭제 ㅇ 시간할애 5회 + 벌점 삭제
앵동	ㅇ 분실물을 습득하여 사감실에 제출한 학생	매회 10점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	ㅇ 교직원의 생활관 운영에 도움을 준 학생	매회 5점	○ 문화상품권(3만원) ○ 체육학과 T셔츠
	ㅇ 솔선수범하여 생활관 자전거를 정리하는 학생		│ㅇ 시간할애 4회
청결	o 부별 담당구역 청결이 우수한 종목(부) o 청소 및 정리정돈이 우수한 학생	매월 10점	○ 벌점 삭제 · < 30점 >
	생활관내 음주, 흡연을 제보한 학생성폭력(집단따돌립, SNS 포함)을 제보한 학생화재유발 물품사용을 제보한 학생	매회 20점	○ 문화상품권(2만원) ○ 시간할애 3회 ○ 벌점 차감
제보	 언어폭력(집단따돌림, SNS 포함)을 제보한 학생 소란 및 소음행위를 제보한 학생 외부인(퇴관생)의 생활관 및 학생식당 이용을 제보한 학생 생활관내 절도, 도박을 제보한 학생 무단이탈(월담) 및 소등 후 야식배달을 제보한 학생 	매회 10점	 ※ 포상 : 각 항목에서 택 1 ※ 체육학과 T셔츠가 소잔될 경우 체육학과 USB로 대체함 ※ 포상 후 상점 소멸 ※ 제보는 명확한 정보로 적발되었을 때 상점을 부여함 ※ 상점을 목적으로 또는 동료간 악감정에 의해 무분별한 허위 제보 금지
	o 생활관내 식기반입을 제보한 학생 o 생활관내 쓰레기 투기를 제보한 학생	매회 5점	* 항급을 극극으로 모든 중요간 악감정에 의해 무분별한 허위 제보 금지

※ 상점은 매 학기 40점까지 누적 됨, 포상내용은 점수별 1개 항목만 선택할 수 있음

○ 위반내용 벌점 점수 및 벌칙(안 제6조제3항 관련, 별표2)

- 위반내용 및 벌점, 벌칙 사항을 제3항 및 별표 2로 하고 전체적인 조정

기존	개정안
/IE	 ▶ 개정안: 60점 ○ 성폭력 ○ 화재유발 ○ 절도, 도박 ○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(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) ▶ 개정안: 50점 ○ 외부인(퇴관생)의 생활관 및 학생식당 이용 ○ 생활관내 음주, 흡연 ○ 물리적 행위(폭력, 얼차려 등) ▶ 개정안: 40점
 ▶ 기존 : 30점 ○ 물리적행위(폭력, 얼차려 등) ○ 성폭력, 언어폭력(집단따돌립, SNS 포함) ○ 음주, 흡연 ○ 절도, 도박 ○ 무단이탈 및 월담 ○ 교직원에 대한 지시 불이행 및 부도덕 행위 	 ○ 주중 생활관 무단이탈(월담) ○ 언어폭력(집단따돌림, SNS 포함) ▶ 개정안 : 30점 ○ 음주 후 생활관 복귀 ○ 소등 후 야식배달(교학처 징계요청 제외) ○ 화재유발 물품사용 (버너, 전기장판, 전기히터, 전기핫팩 등) ○ 관리자에 대한 지시 불이행 및 부도덕 행위
 ▶ 기존 : 20점 ○ 비윤리적 집단의사표시 행동 (집단선동, SNS선동 등) ○ 화재유발 및 화재유발 물품사용(버너, 전기난로, 전기장판, 전기하터, 전기핫팩 등) ○ 무단 미복귀 	 ▶ 개정안 : 20점 ○ 무단 미복귀 ○ 생활관 밖으로 쓰레기 투기 행위 (담배꽁초 포함)
 ▶ 기존 : 15점 ○ 금지된 물품소지 - 술, 담배, 도박용품, 화기유발 물품 등 ○ 허위보고 ○ 입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○ 외부인(퇴관생)의 생활관 및 학생식당 이용 	 ▶ 개정안 : 15점 ○ 화재유발 물품소지 (버너, 전기장판, 전기히터, 전기핫팩 등) ○ 허위보고(외출, 외박증 위조 등) ○ 호실 키드 키 미제가(출전, 외박, 전지훈련 등)
	▶ 개정안 : 10점○ 입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○ 소란 및 소음행위
 ▶ 기존 : 5점 ○ 소등 불이행 ○ 소란 및 소음행위 ○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 ○ 학생자치회 직무방해 	 ▶ 개정안 : 5점 ○ 소등 불이행 ○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 ○ 부별 담당구역 청소 불량 ○ 학생자치회 활동방해 ○ 생활관내 식기반입

기존	개정안
(위반내용별 벌칙-감점 30점 경우) o 「한국체육대학교학생지원규정」 제16호에 따른 징계 - 제적 - 무기정학 - 유기정학 - 근신	(위반내용별 벌칙) 「한국체육대학교학생지원규정」 제16호에 따른 징계 - 제적 - 무기정학 - 유기정학 - 근신 ○ 30점 : 30일 - 60일 퇴사 ○ 35점 : 60일 - 90일 퇴사 ○ 40점 : 90일 - 120일 퇴사 ○ 45점 : 120일 - 180일 퇴사 ○ 50점 : 365일 퇴사 ○ 60점 : 영구 퇴사 ○ 60점 : 영구 퇴사 ※ 징계 후 벌점 소멸(영구 퇴사는 제외)
(공통부문) o 5점: 반성문 제출 및 외출금지 1주 (외박 제외 하향) o 15점: 외출외박금지 2주 o 20점: 외출외박금지 4주 o 30점: 최저180일, 최고365일 퇴사 ※생활관 내외부 청소 등, 봉사활동 7-10일이상	(공통부문) o 15점 : 봉사활동 1주 o 20점 : 봉사활동 2주 o 25점 : 봉사활동 3주 o 30점 : 봉사활동 4주 ※ 봉사활동 : 생활관 내 · 외부 청소 ※ 봉사활동 후 벌점 소멸 비고 : 이 항목은 벌점이 누적 되더라도 퇴사조치 없음. 단, 벌점 50점이 초과될 경우,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학기 입사 여부 결정
※ 벌칙으로 인한 퇴사기간 동안 생활관 식당 이용금지	※ 벌칙으로 인한 퇴사기간 동안 생활관 식당 이용금지
※ 위 벌칙은 태도 여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	※ 벌점 15점 이하는 매월 말일 벌점 소멸

- 입사자의 일일 생활에서 휴식, 실내정리정돈, 점호 시간 변경(**안 제9조**)
- 학생자치운영회에서 입사생의 생활관 문화조성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한 내용 추가(안 제15조제1항)
-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범위에 따라 "최저 180일에서 최고 365일 퇴사" 조치하는 사항을 "최저 30일에서 최고 재학 중 퇴사"로 변경(안 제18조제2항)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, 「한국체육대학교체육특기자관리규정」,

「한국체육대학교학생지원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개정안

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
「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8명"을 "1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사무국장"을 "사무국장, 체육학과장, 대외협력단장, 학생자치운영회장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입사자의 공동체 생활이 모범적이고, 봉사활동 참여가 있을 경우 내용별 상점 및 포상은 별표 1과 같다.
- 1. 상점은 남 · 여 생활관 사감이 관리하며, 매월 상점을 집계한 후 생활관장에게 보고한다.
- 2. 포상은 대상자가 포상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제6조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별표"를 "별표 2"로 한다.

제9조 일일생활 표 중 "휴식 19:00~20:30, 실내정리정돈 21:00~21:30, 점호 21:30"을 "휴식 19:00~21:30, 실내정리정돈 21:30~22:00, 점호 22:00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생활관장은 건전한 생활관 문화조성에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, 생활관의 운영과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자치운영회를 둘 수 있다.

제15조제2항 중 "학생자치운영회는 사람의 학생지도 활동을 보조하며,"를 "학생자치운영회의"로 한다. 제18조제2항 중 "180일에서 최고 365일"을 "30일에서 최고 재학 중"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2로 하고, 별표 1을 신설한다.

부 칙 (제796호, 2019. 7. 2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	현	행			7	내 정	안		
제4조(생활관 운영위원회) ① 생활관 생활, 입·퇴사, 경기 전 식사(특별식)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 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 ②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하고, 위원은 교학처장, 훈련처장, <u>사무국장</u> 및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			제4조(생활관 운영위원회) ①						
제6조(입사자 활동 및 생활수칙) ① (생 략) 〈신 설〉 ③ 입사자는 생활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별 벌점 및 벌칙은 <u>별표</u> 와 같다.			제6조(입사자 활동 및 생활수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입사자의 공동체 생활이 모범적이고, 봉사활동 참여가 있을 경우 내용별 상점 및 포상은 별표 1과 같다. 1. 상점은 남·여 생활관 사감이 관리하며, 매월 상점을 집계한 후 생활관장에게 보고 한다. 2. 포상은 대상자가 포상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③						
제 9조(일일 생 음과 같으며,	_ , _ ,		• ,	제:)조(일일 생활) 				
일 과 기 상 조조훈련 조 식 오전 강의	06 : 00 07 : 30	: 30 - 07:30 - 08:30 00 -	비 고		일 과 기 상 조조훈련 조 식 오전 강의	06 : 00 07 : 30	71- 5 : 30 0 - 07 : 30 0 - 08 : 30 : 00 -	н]	고
중 식 오후 강의 석 식 휴 식 실내정리정돈 점 호	12:00 14:30 18:00 19:00 21:00	- 13 : 30 - 17 : 20 - 19 : 00 - 20 : 30 - 21 : 30 : 30			중 식 오후 강의 석 식 휴 식 실내정리정돈 점 호	12:00 14:30 18:00 19:00 21:30	0 - 13 : 30 0 - 17 : 20 0 - 19 : 00 0 - 21 : 30 0 - 22 : 00 2 : 00		
소등 및 취침		: 00			소등 및 취침	_	3:00		

현 행	개 정 안			
제15조(학생자치운영희) ① 입사자로 구성된 학생자치운영회를 둘 수 있다.	제15조(학생자치운영회) ① 생활관장은 건전한 생활관 문화조성에 학생의 자율 적인 참여를 유도하고, 생활관의 운영과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자치운영회를 둘 수 있다.			
② <u>학생자치운영회는 사감의 학생지도</u> <u>활동을 보조하며,</u>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	② <u>학생자치운영회의</u>			
제18조(퇴사 조치) ① (생 략)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의 범위에 따라 최저 <u>180일에서 최고 365일</u> 퇴사 조치 할 수 있다.	제18조(퇴사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			
<u>〈신 설〉</u>	[별표 1] <u>내용별 상점 및 포상</u> (제6조제3항 관련)			
	구 상점내용 상점내용 ○ 생활관 문제발생(화재 등) 시도움을 준 학생 ○ 동료의 위급상황 시도움을 준 학생 ○ 동료의 위급상황 시도움을 준 학생 ○ 문화상품권 ○ 교직원으로부터 모범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(운영위원회 심의) ○ 채육화과 T셔츠 모 ○ 학생자치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 ○ 시간할애 5회부 설점 삭제 한 학생 ○ 보신문은 스트하여 사가시에 발한			

구 분	상 점 내 용	상 점	포 상				
모 뜀 행 농	 생활관 문제발생(화재 등) 시 도움을 준 학생 동료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준 학생 교직원으로부터 모범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(운영위원회 심의) 	50점	「공통부분」 < 50점 > ○ 문화상품권 (5만원)+발점식제 ○ 체육학과 T셔츠				
	 학생자치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 분실물을 습득하여 사감실에 제출한 학생 	30점 매회 10점	+ 벌점 삭제 ○ 시간할애 5호 + 벌점 삭제				
	이 교직원의 생활관 운영에 도움을 준 학생 이 솔선수범하여 생활관 자전거를	매회 . 5점	 40점 > 문화상품권 (3만원) 체육학과 T셔크 				
청 결	정리하는 학생 o 부별 담당구역 청결이 우수한 종목(부) o 청소 및 정리정돈이 우수한 학생	매월 10점	시간할애 4회벌점 삭제< 30점 >문화상품권				
	 생활관내 음주, 흡연을 제보한 학생 성폭력(집단따돌립, SNS 포함)을 제보한 학생 화재유발 물품사용을 제보한 학생 		(2만원) ○ 시간할애 3회 ○ 벌점 차감 ※ 포상 : 각 항목에서 택 1				
제보	 언어폭력(집단따돌림, SNS 포함)을 제보한 학생 소란 및 소음행위를 제보한 학생 외부인(퇴관생)의 생활관 및 학생식당 이용을 제보한 학생 생활관내 절도 도박을 제보한 학생 무단이탈(월담) 및 소등 후 야식배달을 제보한 학생 	매회 10점	※ 체육학과 T 셔츠가소진될 경우 체육학과 USB로 대체 함 ※ 포상후상점소程 ※ 제보는 명확헌 정보로 적발되었을 때 상점을 부여함				
	 생활관내 식기반입을 제보한 학생 생활관내 쓰레기 투기를 제보한 학생	매회 5점	* 상점을 목적으로 또는 동료간 악감정에 의해 무분별한 허위 제보 금지				

※ 상점은 매 학기 40점까지 누적됨.※ 포상내용은 점수별 1개 항목만 선택할 수 있음.

혀 해 개 정 아 [별표] 위반 내용별 벌점 및 벌칙 [별표 2] 위반 내용별 벌점 및 벌칙 (제6조제2항 관련) (제6조제3항 관련) 위 반 내 용 위 반 내 용 감점 벌 비고 벌점 비고 ㅇ 성폭력 「한국체육대학교학 ㅇ 화재유발 생지원규정」 제16호에 ㅇ 절도, 도박 따른 징계 60 ㅇ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 - 제적 하다고 인정된 자 - 무기정학 (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) - 유기정학 0 「한국체육 ㅇ 외부인(퇴관생)의 생활관 - 근신 ㅇ 물리적행위(폭력, 얼차려 등) 대학교학생 및 학생식당 이용 o 성폭력, 언어폭력(집단따돌립, SNS 지원규정」 ㅇ 생활관내 음주, 흡연 ㅇ 30점: 30일 - 60일 포함) 제16호에 0 물리적 행위(폭력, 얼차려 등) ㅇ 음주, 흡연 퇴사 따른 징계 30 ㅇ 주중 생활과 무단이탈(월담) ㅇ 35점: 60일 - 90일 ㅇ 절도, 도박 - 제적 ○ 언어폭력(집단따돌림, SNS 포함) 퇴사 ㅇ 무단이탈 및 월담 - 무기정학 ㅇ 교직원에 대한 지시 불이행 및 ㅇ 40점: 90일-120일 ㅇ 음주 후 생활관 복귀 - 유기정학 부도덕 행위 퇴사 ㅇ 소등 후 야식배달(교학처 - 근신 ㅇ 45점: 120일-180일 징계요청 제외) 퇴사 ㅇ 화재유발 물품사용 (버너. ㅇ 50점: 365일 퇴사 전기장판, 전기히터, 전기핫팩 등 ㅇ 60점 : 영구퇴사 ㅇ 관리자에 대한 지시 불이행 ※ 징계후 벌점 소멸 및 부도덕 행위 (영구퇴시는 제외 ㅇ 비윤리적 집단의사표시 행동 (공통부문) 0 무단 미복귀 이행목은 ㅇ 5점: 반성문 ㅇ 생활관 밖으로 쓰레기 투기 행위 (집단선동, SNS선동 등) 벌점이 ㅇ 화재유발 및 화재유발 물품사용 제출및외출 (담배꽁초 포함) [공통부분] 누적 되 20 (버너, 전기난로, 전기장판, 전기 금지 1주 ㅇ 화재유발 물품소지 (버너, 더라도 히터, 전기핫팩 등) ○15점: 외출 전기장판, 전기히터, 전기핫팩 등 o 15점: 봉사활동1주 財函 ㅇ 무단 미복귀 외박금지 2주 ㅇ 허위보고(외출, 외박증 위조 등) 15 o 20점: 봉사활동2주 없음단 ㅇ 금지된 물품소지 ○20점: 외출 ㅇ 호실 카드 키 미제거(출전, o 25점: 봉사활동3주 벌점 - 술, 담배, 도박용품, 화기유발 물품 등 외박금지 4주 외박, 전지훈련 등) o 30점: 봉사활동4주 50점이 ㅇ 허위보고 ○30점: 최저 o 입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추과될 10 ㅇ 입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80일, 최고 ㅇ 소란 및 소음행위 ※ 봉사활동: 생활관 경우, ㅇ 외부인(퇴관생)의 생활관 및 학생 365일 퇴사 내 · 외부 청소 운영위 ㅇ 소등 불이행 식당 이용 ※생활만내외부 ※ 봉사활동 후 벌점 원화서 ㅇ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 ㅇ 소등 불이행 청소 등 다음하] 소멸 ㅇ 부별 담당구역 청소 불량 5 0 소란 및 소음행위 봉사 활동 양여분 5 ㅇ 학생자치회 활동방해 ㅇ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 7-10일 결정 ㅇ 생활관내 식기반입 ㅇ 학생자치회 직무방해 이상 ※ 벌칙으로 인한 퇴사기간 동안 생활관 ※ 벌칙으로 인한 퇴사기간 동안 생활관 식당 이용 금지 식당 이용 금지 ※ 위 벌칙은 태도 여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※ 벌점 15점 이하는 매월 말일 벌점 소멸 최 (제796호, 2019, 7, 22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